

외국인투자 우대 및 규제 사항

가. 외국인투자 우대조치

(1) 개요

-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투자자에게 특정한 투자우대조치 부여보다는 조세, 법규, 은행, 관세, 경제개혁 등 전반적인 투자환경 개선에 치중해 왔음. 같은 맥락에서 2002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종합세법 제2부는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그동안 시행되던 대부분의 조세우대 조치는 철폐하였음.¹⁾
- 일반적 우대조치와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우대조치가 일부 남아 있으며, 이 우대조치는 내·외국인에 동등하게 적용됨. 한편, 특정지역도 조세감면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음.

(2) 일반우대조치

- 외국인투자법(제160-FZ호)은 외국인투자자가 내국인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음을 명시하는 한편, 일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특정한 우대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종합세법 제2부 제25장은 많은 조세우대조치 실시를 제한²⁾하였으며, 일부 중요한 조세감면조치는 취소³⁾시켰음. 특히, 종합세법 제2부에서 법인세율을 24%로 인하하는 등 총체적 조세제도 개선⁴⁾으로 투자자에게 조세감면보다는 지방정부의 관료주의체질 개선 등 태도변화가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1) 4. 조세제도(가. 법인세)편 참조.

2) 지방정부의 법인세 감면권한, 장애인 고용주에 대한 조세감면, 다수의 특정산업 조세감면 등

3) 자본투자공제, 신규제조설비에 대한 조세면제 등

4) 모회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자산을 양도하고 1년 이내 처분한 경우 러시아 기업이 외국기업으로부터 투자목적으로 금융을 제공받아 1년 이내 처분한 경우 등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

- 종합세법 제21장 149조는 국가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재화 및 용역의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VAT)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의료용 제품 및 서비스, 특정목적의 사회 및 경제프로그램, 필름 생산, 은행 및 보험서비스, 특정 형태의 도박, 국가귀금속기금에 대한 금속제품 판매, 수출목적용 귀금속광물의 가공업체 판매, 다이아몬드원석의 가공업체 판매, 과학·교육·문화·훈련서적의 판매 등이 포함됨.
- 조세법 150조는 다른 VAT 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원조용으로 러시아에 반입된 모든 재화, 현물출자용으로 반입된 일부 고정자산(기술적 설비, 부품 등)은 VAT 면제대상임. VAT는 2004년 1월 1일부로 20%에서 18%로 인하되었으며, 러시아 정부는 2006년부터 15%로 낮출 예정임.
- 관세율법(제5003-I호, 1993. 5. 21)은 특정한 활동과 투자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있음. 동법 35g조는 기부 목적으로 반입된 원조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며, 러시아 정부와의 협약에 근거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장비 및 설비는 관세면제 대상임.

(3) 특정산업 우대조치

- 생산물분배협정(Production Sharing Agreement: PSA)은 러시아 정부가 특별한 조건과 보상을 전제로 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협정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광물 자원을 탐사하고 채굴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투자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 하에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됨. PSA에 따라 광물채굴분야 투자자는 각종 조세감면 및 우대조치를 부여받게 되며, 외국인투자법은 PSA를 통해 진출한 외국인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한편, 기존 PSA 체계를 상당히 위축시킨 내용의 생산물분배법(Product-Sharing Law 제225-FZ호, 1995. 12. 30) 개정안이 2003년 6월 발효되었음. 동 개정법안은 PSA 방식이 적용될 대상을 크게 축소시켰으며, 투자자선정 자격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러시아 국산품 투입요건은 한층 강화하고 기존에 PSA 방식으로 투자자가 누리던 각종 혜택을 크게 축소시켰음.
- 또한, 2003년 7월 7일 연방조세법에 추가된 제26.4장은 PSA 방식에 대한 특별조세방식을 규정하였는데, 이로써 PSA 방식으로 러시아 자원개발권을 획득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음.

- 러시아 정부가 개별우대조치 축소 및 폐지와 세율인하와 세제행정 개선을 통한 전반적인 투자환경 개선이라는 투자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산업분야의 우대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 은행 및 보험 :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VAT 면제
- 방송·언론 및 서적 : 2002년 1월 1일부터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신문을 제외한 모든 방송·언론사는 10%의 VAT가 적용되고, 인쇄서비스는 18%의 VAT가 적용됨. 단, 교과서, 선정성과 광고가 없는 학술지 등은 면세혜택 유지
- 필름 생산 및 유통 : 러시아산 필름의 생산, 인쇄, 전시에 관한 계약은 VAT 면제대상
- 자동차산업 : 특정 수입부품은 VAT가 면제되며, 러시아산 부품에 대한 면세혜택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국제운송업체, 항공사, 병원, 농업 등도 VAT 면제대상임.

(4) 투자지역 우대조치

- 종합세법 제2부 제25장(2002. 1. 1. 발효)은 광역지방정부나 기초지방정부가 부여하던 조세감면 권한을 대폭 축소시켰으며,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특정한 우대조치를 규정하지 않았음.
- 종합세법 제2부 도입 이전에는 St. Petersburg, Novgorod, Leningrad Oblast 등 일부 지역은 조세감면 혜택이나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음.
-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발틱해 연안의 Kaliningrad와 동북부의 Magadan에 자유경제지역(free economic zone)⁵⁾이 설치되었으나, 외국인투자 유치효과는 별로 크지 않았음.
- 2004년 1월 1일부로 두 자유경제지역 외에 투자자에게 특정한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특별경제지역(special economic zone)은 모두 철폐되었으며, Kaliningrad와 Magadan 지역의 우대조치도 매우 제한적임.

5) 7. 무역 및 관세제도(마. 자유무역항·자유무역지대) 참조.

(5) 수출 우대조치

- 특별한 수출 우대조치는 없음.

나. 외국인투자 규제사항

(1) 외국인참여 제한분야

- 모든 기업지분의 인수는 연방금융시장국에 등록되어야 하며, 20%를 초과하는 지분취득은 연방반독점국(Federal Anti-monopoly Service)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함.
- 러시아 정부는 법령, 포고령에 의하거나 또는 지배주주의 자격으로, 가스, 전력 등 전략적 분야와 민감 분야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취득을 제한하고 있음.

(가) 천연가스

- Gazprom 지분 통합에 관한 대통령령 제1020호(1999. 8. 19)는 Gazprom(천연가스 산업 독점 국영기업)과 그 자회사 지분의 외국인 보유한도를 20%로 제한하는 한편, 정부의 최소 보유지분은 종전 30%에서 38%로 높였음. 또한, 동 포고령에 따라 비거주자 조직은 미국증시예탁증서(American depositary receipts: ADRs)만을 구입할 수 있고 국내주식 취득은 금지되어 있음.⁶⁾

(나) 전력

- 1998년 제정된 국영전력회사인 통일전력시스템(Unified Energy System: UES) 및 다른 국영에너지회사의 지분처분 규정에 관한 연방법(제74-FZ호)은 UES의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는 25%로 제한하며, 국가는 51%의 지분을 보유토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동법이 아직 발효되지 않아 외국인의 UES 지분보유규모는 3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현재 UES의 발전, 송전, 배전 분야를 분할하고 시장자유화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력분야 구조조정은 여러 차례의 지연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빨라야 2007년경 완료될 것으로 관측됨.

6) 2004년 9월 러시아 정부는 이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외국기업들도 저렴한 국내주식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Gazprom과 국영석유기업인 Rosneft와의 합병추진이 무산되면서 이 규제의 해제 가능성은 불확실한 상태임.

(다) 민간항공

- 1998년의 항공산업발전법에 기초한 민간항공법은 외국인의 지분보유 한도를 민항기제조사의 경우 25%, 민간항공사의 경우 49%로 제한하였으며, 합작기업의 대표는 러시아인이어야 하고 외국인이 이사회 구성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음. 한편, 경제개발·통상부는 민항기제조사의 외국인지분한도를 49%로 늘리는 법규개정 추진을 밝혔으나, 아직까지 법규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실무적으로는 민항기제조면허를 신청하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설립되는 민항기제조사 지분의 25%를 보유하고, 외국기업은 자신이 25% 이상의 지분을 갖는 별도의 국내법인을 설립하고, 이 국내기업을 구매대행사로 하여 25% 지분한도 규정을 피하고 있음. 민간항공법은 이런 방식의 외국인 참여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우회방식을 활용한 민항기제조 면허 발급 사례가 있음. 그러나 면허발급기관인 Rosaviakosmos는 방침을 바꾸어 이런 우회방식의 면허발급을 금지할 것으로 보임.

(라) 다이아몬드광산

- 귀금속류에 관한 연방법(제41-FZ호, 1998. 3. 26)은 다이아몬드광산 기업에 대한 외국인지분 합계를 소수지분(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음. 또한, 동법은 중앙 및 지방정부와 다이아몬드, 귀금속 광산에 대한 계약서명에 관한 특별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마) 은행

- 외국기업이 러시아 은행 및 여신기관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하나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음. 2001년 12월 정부와 중앙은행간 체결된 은행개혁전략에 따라 사전허가 없이 10% 미만의 지분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나, 10% 이상의 지분취득은 사전허가가 필요함.
- 중앙은행법(86-FZ호, 2002. 7. 10) 18조에 따라 중앙은행은 외국자본의 은행부문 진출 조건을 정하고, 진출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현재 중앙은행은 12%의 지분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 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러시아 중앙은행은 한도확대를 고려 중임.

(바) 보험

- 보험업 조직에 관한 연방법(제204-FZ호, 1999. 11. 20)은 외국보험회사의 자회사 또는 외국투자자가 49% 이상 지분을 가진 러시아기업의 자회사에 대해서는 생명보험, 강제사회보험, 각급 정부조직의 재산에 대한 보험의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러시아의 WTO 가입추진으로 보험업에 대한 외국기업 진출제한이 완화되고 있는데, 2003년 12월 보험법 개정을 통해 EU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이 현지자회사 설립을 통해 보험업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EU 역외기업은 EU 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우회진출이 가능함. 현재 외국기업에 대한 유일한 제한은 외국 자본의 참여 한도를 보험산업 전체 자본의 25%로 제한하는 것임.

(사) 언론·방송

- 러시아연방 매스미디어법(제107-FZ호, 2001. 8. 4)은 매스미디어에 대한 외국인지분을 제한하고 있음. 동 법에 따르면 외국법인, 외국법인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러시아법인, 이중국적자 등의 러시아 내 텔레비전 방송국 설립 및 프로그램 공급이 금지되며, 89개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이상 또는 전 인구의 절반 이상에 TV전파를 발송하는 기업설립도 금지됨. 또한, 동법은 외국인지분이 50%를 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미디어기업의 지분이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함.

(아) 토지

- 농지거래법(제101-FZ호, 2002. 7. 24)에 따라 외국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리스는 가능함. 외국인이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러시아 기업에도 동일한 요건이 적용됨.

(2) 건축관련 허가

- 기업은 공장건설, 확장 등에 있어 지역, 환경, 건축, 위생, 소방, 기타 관련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사전허가를 얻어야 함.

- 모스크바의 경우, 통상 3단계(1단계 디자인 개념, 2단계 상세계획, 3단계 최종검토 등)의 사전허가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프로젝트의 성격, 지역, 관할단체와의 관계 등에 따라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의 시일이 소요되기도 함.

(3) 부동산 취득

- 러시아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취급하고 있으며, 양자의 권리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토지에 비해 건물 소유권에 관한 규정은 단순한 편임.
- 러시아 민법은 건물 사용 및 매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러시아인, 외국인, 법인 등에 대해 동등한 건물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음.
- 러시아연방 헌법(1993)은 토지소유권에 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동 법 9조는 토지의 사유제 원칙을 확립하고 있음.
- 연방토지법(제136-FZ호, 2001. 10. 25)은 비농업용 토지의 매매를 법적으로 허용했고, 상업적 토지시장 형성의 토대가 되었으며, 토지를 대출 담보나 현물출자 자산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음.
- 한편, 연방토지법이 제정되기 전 일부 지방정부는 토지소유권 및 토지매매의 허용 등 상당히 발전된 형태의 토지관련 제도를 운용해 왔음. 그러나 연방토지법은 기존 지방정부의 규정에 우선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제도 및 규정이 연방법에 위배되는지를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공공부문 소유의 토지가 입찰 또는 경매방식으로 개인이나 민간법인에 양도될 수 있음. 단, 해당토지에 건물이나 기타 시설이 있는 경우는 건물 및 시설 소유주가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며, 신규개발 토지인 경우 해당 지역의 허가절차를 밟고 있는 투자자가 매입할 수 있어 입찰이 요구되지 않음.
- 농지거래법(제101-FZ호)은 농지에 대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권리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외국인 및 외국인이 50% 이상 지분을 갖는 러시아 법인은 토지임차권만을 가질 수 있음.

- 한편, 러시아 민법이나 토지법은 비농업용 토지의 임차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토지임차권은 49년을 넘지 않고 있으며, 연방민영화법은 국가 및 지방정부 소유 토지의 임차기간을 49년 이내로 명시하고 있음. 농업용 토지의 최장 임차기간은 49년임.
- 또한, 일반적 제한으로서 농업용 토지는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대상이 될 수 있음.

(4) 국산품 및 내국인 고용 요건

- 생산물분배법은 러시아 법인에 하청계약자로서 계약수행을 위한 우선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 러시아 관계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외국노동자나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음. 설비생산 주문의 최소 70%는 러시아 기업이나 러시아에 납세자로 등록된 외국기업이 담당해야 하며, 고용 인력의 80%는 러시아인이어야 함.
- 정부령 531호(1993)는 국가가 발주하는 건설계약의 경우 30% 이상을 국내 하청 계약자에게 할당하고, 우선적으로 국내자재를 사용할 것을 강제하고 있음.
- 중앙은행규칙 제02-195호(1997. 4. 23)는 외국인소유 은행 등록의 추가적인 요건을 설정하였음. 동 규정에 따르면, 인력의 75%는 러시아인이어야 하며, 외국인이 대표이사 직위를 차지하는 경우 이사회 50%는 러시아인이 차지해야 함. 또한, 본사파견 이사 중 최소 1명은 러시아어 업무수행이 가능할 만큼 러시아어에 능통(공인된 입증서류 첨부)해야 하며, 외국인이 참여한 보험회사는 대표이사와 선임회계사는 러시아인이어야 함.